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31
----------	-------

발의연월일 : 2025. 12. 4.

발 의 자 : 진성준 · 임오경 · 김교홍
강준현 · 황명선 · 안호영
정태호 · 안도걸 · 위성곤
문정복 · 이학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명 ‘기업형 브로커’가 일반인을 조달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을 받게 한 후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당 입찰건을 넘겨 받아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물품조달 등을 수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부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가 입찰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여 조달청장이 이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한 계약에서 이와 같은 행

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달청장이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브로커에 의한 불공정 조달행위를 방지하고 조달 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계약상대자등”을 “계약상대자등 및 브로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계약상대자등은”을 “계약상대자등 및 브로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계약상대자등이”를 “계약상대자등 및 브로커가”로,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브로커”라 한다)가 부당하게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
8. 계약상대자가 브로커와의 협약 등에 의하여 금전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제조자 또는 공급자 선정·관리 등 계약의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브로커 등 제3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⑧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한 계약에서 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행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에 이에 관한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브로커”라 한다)가 부당하게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u>

<신 설>

② · ③ (생 략)

④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된 계약상대자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불공정 조달행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

8. 계약상대자가 브로커와의 협약 등에 의하여 금전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제조자 또는 공급자 선정·관리 등 계약의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브로커 등 제3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계약상대자등 및 브로커-----

-----.

⑤ -----
----계약상대자등 및 브로커는

-----.

⑥ -----계약상대자등 및 브로커가-----
제8호-----

위로 이득을 얻은 때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생략)

<신설>

-----.

⑦ (현행과 같음)

⑧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한 계약에서 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행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에 이에 관한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